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민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750

발의연월일: 2024. 9. 6.

발 의 자:최민희·김 윤·김태년

김 현 · 문금주 · 양부남

오세희 • 윤준병 • 이광희

이연희 • 이재관 • 임미애

정동영 · 정진욱 · 조인철

주철현 • 채현일 의원

(총 17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는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정보의 공개 및 소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음.

그런데 현행법(원자력안전소통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공개하지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원자력안전은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 정보이기 때문에, 원자력 사업자의 이익보다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함. 이에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더라도, 1) 사업활동에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이거나, 2)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안전정보에 해당할 경우에는 정보의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원자력안전기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확보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3호).

법률 제 호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 정보공개 및 소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제외한다.

-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 안전정보
-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워자력안전정보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제6조(원자력안전정보의 비공개
대상) ①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대상) ①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이하	
"원자력안전정보관계기관등"이	
라 한다)이 보유・관리하는 원	
자력안전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자력안전정	
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3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	
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	
는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원	
자력사업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원자력안전정보	<u>다만,</u>
<단서 신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원자력안전정보는 제
	<u>외한다.</u>
<u><신 설></u>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
	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

	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
	<u>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u>
	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력
	<u>안전정보</u>
<u> <신 설></u>	<u>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u>
	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원자
	<u>력안전정보</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